

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[별표 4] <신설 2022. 2. 25.>

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(제20조의2제2항 관련)

1. 환경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된 시·도별 교부비율을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값(%p)만큼 가감하여 조정한다.

$$\text{조정값}(\%p) = \frac{10}{100 - Kai} \times [\text{소각률}(\%) - Kai]$$

2. 시·도에 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순환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조정된 교부비율에 10%p를 가산한다.

비고

1. 제1호에 따른 조정값의 최소값은 -10%p로 한다.
2. Kai: 전체 시·도의 평균소각률(Average Incineration ratio)
3. 소각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영 별표 5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소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.

$$\text{소각률}(\%) = \frac{\text{폐기물 소각처분량} \times \text{소각보정계수}(0.8321)}{\text{폐기물 소각처분량} \times \text{소각보정계수}(0.8321) + \text{폐기물 매립처분량} \times \text{매립보정계수}(1)} \times 100$$

4. 조정값은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번째 자리까지 산출한다.